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9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김기현・임이자・유상범

김정재 · 이달희 · 백종헌

박성민・김 건・조정훈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창(營倉)·근신(謹愼)"을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謹愼)"으로, "한다"를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 2. 복무기강교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의무소방대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하여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

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 ⑤ 의무소방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제5조(징계) ①
징계는 <u>영창(營倉)</u> ·근신(謹愼)	<u>강등,</u> 복무기강교육, 감봉 <u>,</u>
및 견책(譴責)으로 <u>한다</u> .	휴가단축, 근신(謹愼)구분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u>다</u> .
<u><신 설></u>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u>낮추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2. 복무기강교육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소방대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u>이내로 한다.</u>
<u><신 설></u>	<u>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u>
	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
	<u>상 3개월 이하로 한다.</u>
<u><신 설></u>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
	하여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
	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 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 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말한다.

<신 설>

-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u><삭 제></u>

⑤ 의무소방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

	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
	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렁으로
	<u>정한다.</u>